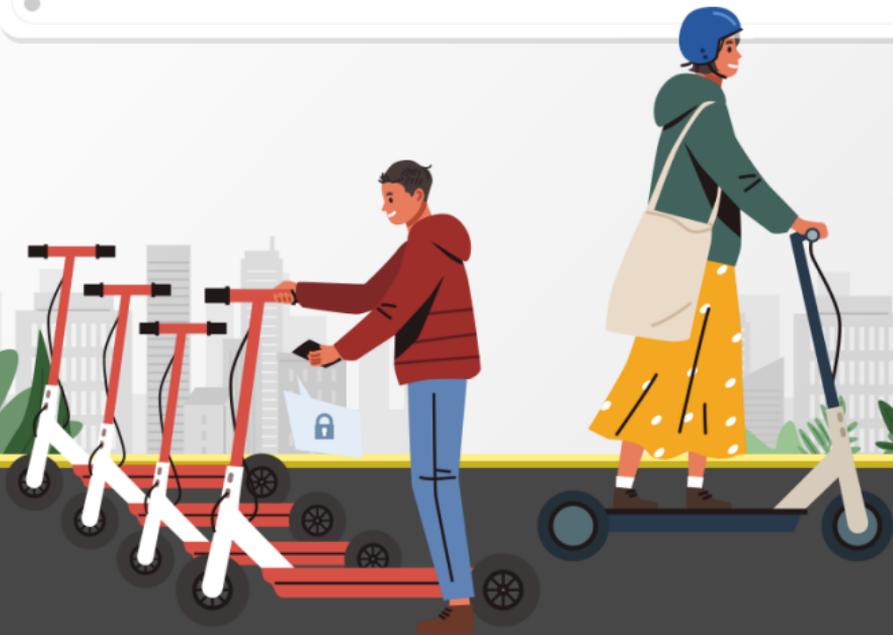


**보행자의 위태로운 보행안전,
즐기로운 PM 이용법으로 지키자!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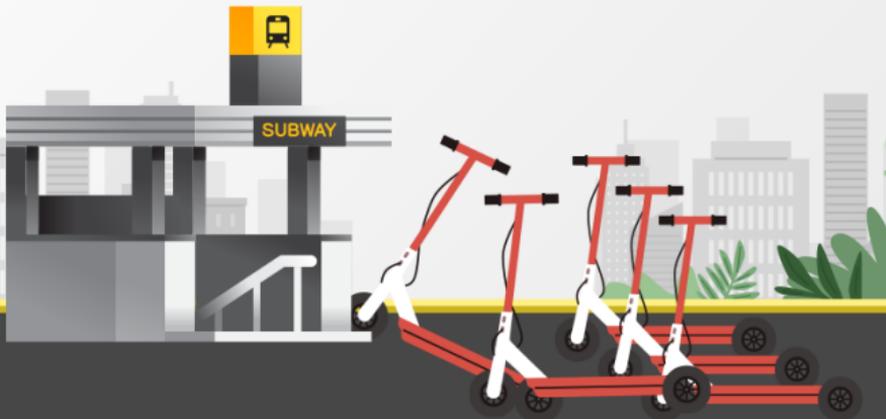
전동 킥보드, 자전거까지~
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
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(PM)!

하지만 거리에 많아질수록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는 중?!

서울시내 공유PM 현황

18년 150여 대 → '20년 35,850여 대 → '21년 68,025여대

서울시내 공유 PM 사고 건수 17년 29건 → '19년 134건



무단 방치된 킥보드와 자전거,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중!



보도 위에 두고 간 킥보드!

내가 왜 마음대로 둔 킥보드를 피해
걸어가야 하나요?



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
앞에 두고 간 킥보드!

버튼을 누르려다 걸려 넘어지면
책임지실 건가요?



소화기 앞에 두고 간 자전거!

화재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
주범이에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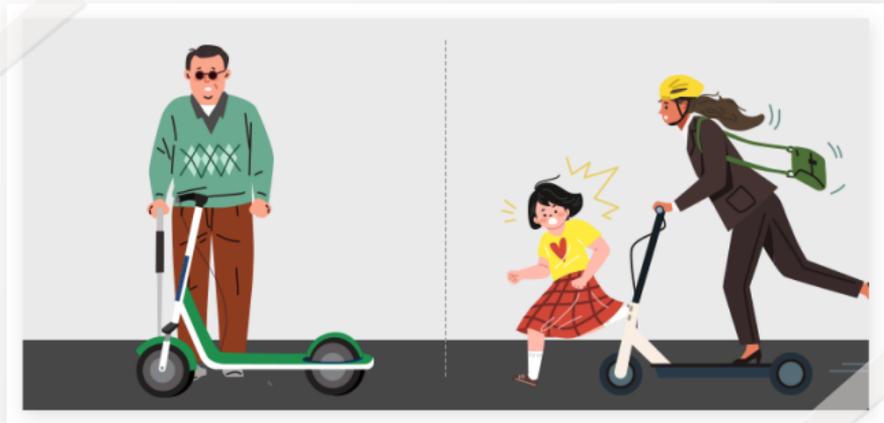
버스 정류장에 아무렇게나
두고 간 자전거!

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
자전거까지 피하려니 피곤해요.

“에이, 뭐 그냥 뒤도 관찮겠지”라는 생각은 그만!
무심하게 세워놓은 킥보드와 자전거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.

만약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가 질주하는 킥보드를 마주친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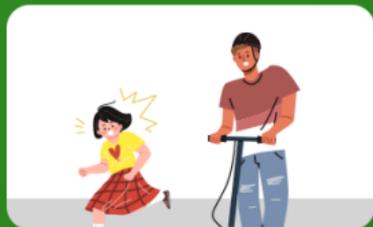
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수적인 교통약자에게 배려 없는 PM 사용은 큰 공포와 위협이 됩니다.



그렇다면 **PM이용자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와
공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**은 무엇일까요?

※ 주행 시 개인용 이동수단(킥보드, 자전거, 이륜차)은
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세요!

5월부터 범칙금·과태료 부과! PM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?



- 1 보행자가 있는지 언제나 확인!**
킥보드,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,
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



- 2 원동기 면허 없으면 탑승 NO!**
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(최대 20만 원)
※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 이용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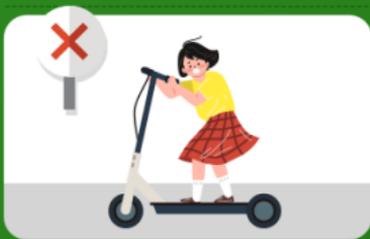
- 3 라이타닉은 이제 그만! 혼자 타기!**
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(최대 20만 원)

5월부터 범칙금·과태료 부과! PM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?



1 음주운전 안돼요!

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(최대 20만 원),
측정 불응 시 13만 원



2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돼요!

만 16세 이상,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!
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
보호자 10만 원(최대 20만 원) 과태료



3 헬멧 미착용 안돼요!

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
운전자 2만 원(최대 20만 원) 범칙금

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(PM)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
5월 13일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!

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①



갑자기 사람이 증발했다...?
도보와 자전거 도로 위 주차는 그만!

다른 킥보드/자전거 이용자가
넘어질 수 있어요.



이용 후 보행자 통행 및 차량 흐름을
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잘 맞춰 나란히!

꼼꼼한 주차는
모두의 사고를 예방합니다.

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!
**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
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 ②**

주차 권장구역



가로수, 벤치, 가로등, 전봇대, 환풍구 등
 주요 구조물 옆

주차 제한구역



지하철역 진출입로, 버스정류소 및
 택시승강장 등 통행 시
 직,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



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



횡단보도·보도·산책로
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

기본적인 안전수칙, 기억해 주세요!

- ✔ **질주금지!** 자전거-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더욱 감속하기
- 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기
- ✔ 이용 시 이어폰과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
- ✔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이용 자제

**보행자도 퍼스널 모빌리티(PM) 이용자도
걱정 없이 걷고, 탈 수 있도록
보행 안전, 우리 함께 지켜요!**

